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1호 2025. 10. 1. (수)

조례 · 규칙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28
○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31
○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52
○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	55
○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0
○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75
○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79
○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목포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97
○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100
○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12
○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128
○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4
○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169
○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174

고시 · 공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법예고문)	190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96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47 호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집회한다”를 “집회하며,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요일”을 “월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 (회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u> 제4조 (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u>집회한다.</u> 1. (생 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u>금요일</u>에 집회한다.	<u>제3조(회기)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u> 제4조(집회일) ----- ----- . ----- ----- <u>집회</u> <u>하며,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 2. ----- <u>월요일</u>-----.

관련법 조항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48 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
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49 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기금운용 또는”을 “임명하거나 위촉하
고,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임명하</u> <u>거나 위촉하고,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u> ----- -----. 1. (현행과 같음) 2. <u>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 3. <u>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u> ④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8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u>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관련법 조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0 호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수”를 “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목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u>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 려하여야 한다.</u> 1. · 2. (생 략) 3. 변호사, <u>교수</u>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 ----- ----- --.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 <u>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 <u>교수, 시민단체가 추천 한 자</u>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주민투표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적용 기준표(제5조 관련)				[별표 1] 주민투표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적용 기준표(제5조 관련)			
인구 규모 (19세 이상 주민 수)	적용 비율	인구 규모 (19세 이상 주민 수)	적용 비율	인구 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 비율	인구 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 비율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거 : 2004. 4. 14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제정요령)				(삭 제)			

관련법 조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1 호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시민”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시장은 목포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목포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목포시민인권위원회

제9조(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목포시 인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목포시 조례 및 정책의 인권 친화성 여부에 대한 사항
3. 공공기관(시장 소속 및 감독기관 포함) 내 인권 관련 민원 또는 진정사건에 대한 사항
4. 시민 인권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의견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교육, 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독립성 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목포시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필요시 해당부서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다른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인권옹호관

제16조(옹호관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소속 옹호관을 둔다.

②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옹호관은 목포시에 접수된 상담이나 진정 및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옹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상담 · 조사
2.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인권에 관한 교육
4. 인권과 관련된 기관 · 단체와 교류 · 협력
5.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사건의 조사 등) ①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해당기관에 출석 ·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진술청취,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등에 상담 ·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키거나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진정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⑥ 옹호관 및 상담·조사·갈등해결 업무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진정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대상기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목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목포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제20조(비밀누설금지)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옹호관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제척 등) 인권위원 및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을 한 경우
4.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원,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포시민인권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민인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민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2 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을 위하여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방법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예방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법 활동을 결합하여 활동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목포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반려인과 그 반려견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
2. 범죄 또는 위험 요소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
3. 재난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 및 신고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대상 정서적 교감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전 및 공동체 연계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인식표, 장비 등 물품 구입비
2. 순찰 활동 운영비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순찰대원 교육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4. 순찰대원의 상해보험 가입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자치위원회, 시민단체, 수의사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3 호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이 공공의 사회 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노동자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5.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 수당 등)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지원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 수당 지급
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돌봄노동자, 노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3. 장애인돌봄노동자, 장애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4. 돌봄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 주무팀장이 된다.

제16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목포시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돌봄노동자를 위해 운영하는 센

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4 호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5 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지역 특성화 및 안전 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조성정 책”을 “조성 정책”으로 한다.

제19조 중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략)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② (생략)	제11조(지역 특성화 및 안전 사업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 ③ (생략)	제1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④ -----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
성정 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
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 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조성 정
책-----
-----.

제19조(수당 등)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6 호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략) <신설>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② (생략) <신설>	제11조(지역 특성화 및 안전 사업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 ③ (생략)	제1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④ -----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u>조</u> <u>성정</u> <u>책</u>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 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 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u>실비</u> <u>변상조례</u>」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u>조성 정</u> <u>책</u>----- -----. 제19조(수당 등) ----- ----- 「목포시 각종 위원회 <u>실비</u><u>변상</u> <u>조례</u>」----- -----.
---	---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7 호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어린이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형위원 중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6조제1항 중 “예술단체”를 “예술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향”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예술단원”을 “단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7세”를 “60세”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구성) ① (생 략)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 2. (생 략) 3. 합창단은 성인 및 <u>어린이합 창단</u> 을 두며,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 로 각각 구성한다. 4. (생 략) <u><신 설></u>	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소년소녀합 창단</u> ----- ----- ---. 4. (현행과 같음) <u>제4조의2 (위원의 제척 · 회피) ①</u> <u>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u> <u>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u> <u>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u> <u>없는 것으로 본다.</u> <u>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u> <u>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u> <u>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u> <u>해당 위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u> <u>하여야 한다.</u> <u>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u> <u>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u> <u>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u> <u>여하지 않아야 한다.</u>
제5조 (전형위원) ① · ② (생 략)	제5조 (전형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이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비상임단원은 전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7조 (자격과 위촉) ①·② (생략)

③ 예술단원은 목포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5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57세로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

③ 전형위원 중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6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예술단-----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

제7조 (자격과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촉연령) ① -----

----- 60세-----.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단원의 해촉) -----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 6. (생 략) 제14조 (실비보상) ①·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 (실비보상)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목포시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 ----- -----. ④ (현행과 같음)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 8. (생략)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8 호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대학 및 기관(단체)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7. 아동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 아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8. 청소년시설 생활 및 이용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9.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59 호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세화”란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목포시 세화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세화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 작품 외 작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세화진흥사업) 시장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화 창작 지원 사업
2. 세화 전시 지원 사업
3. 세화 창작, 세화 소장품 및 세화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
4. 지역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작품과 작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6. 세화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세화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0 호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하고자”를 “조성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10.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장은 독 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 공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u>조성하고자</u>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 ----- ----- <u>조</u> <u>성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u>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u> <u>확산 사업</u>
<u><신 설></u>	<u>10.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u> <u>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u>사업</u>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1 호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 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

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① 시장 또는 지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

2.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상하수도요금 또는 지방세 감면

3.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4. 시 홈페이지·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	임대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 락 처 :		
	임차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 락 처 :		
	소재지					
	점포명		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	인하 기간					
	현재 보증금 / 월세		임대료 총 인하액			

위와 같이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목포시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2.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5.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재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			
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 · 이용 목적

- 목포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상가 현판 부착 업체에 제공)	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목포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2 호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목포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 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 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 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3 호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 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4 호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

3. “알이백(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알이백(RE100) 산업”이란 알이백(RE100) 참여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이용·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의에 따라 발전산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알이백(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알이백(RE100) 산업 발전 방안
4.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알이백(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7.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알이백(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4.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증기업)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목포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 시장은 알이백(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백(RE100) 참여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

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 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 설비와 이를 통제·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 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 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5 호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7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
다.

제7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감안하여”를 “감안하여 1차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에 허가받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는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 ----- ----- ----- -----.
4. “지식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문화·지식·	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소프트웨어기업·자연과학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한다.

제7조 (사용)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 (사용료 등) ①제7조에 따라 각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지원센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입주보증금,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3년-----
---- 감안하여 1차례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사용료 등) ①-----

----- 부과
한다.

②-----

----- 징수
한다.

목포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6 호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 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 성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 원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합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제5조(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7 호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
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 나.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 다.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
- 라.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 해 하

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2. “방치선박 등”이란 방치선박 외에도 방치된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구역(항계 외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계 내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방치선박 등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현황, 위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방치선박 등 조치와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 공고기관,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유수면 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

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유수면 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 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발견장소·조사일자·조사내용·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된 선박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관계법령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2016. 5. 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공유수면법」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8 호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

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목포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영 주차장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

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며. 법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행위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 제9호의2	20	50	100

(이하 생략)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 6. (생략)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생략)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69 호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로 한다.

제2조 중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이하“센터”)”를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를 “센터

의”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u>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u>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u>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u>(이하 “센터”)는 목포시 허사로33번길 48-4에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u>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u>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u>(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u>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u>해상풍력 플랫폼센터</u>----- ----- -----. 제2조(위치) ---- <u>해상풍력 플랫폼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 ----- -----. 제9조(운영위원회) ① <u>센터</u>의 --- ----- ----- ----- <u>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u>-----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0 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2회 이내의”를 “1회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50으로”를 “75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제36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을”을 “75를”로 한다.

4.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정이 곤란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도 제36조제5항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제36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u>2회</u>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 ----- <u>1회로 하며</u> ----- ----- ----- ----- -----.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u>50</u> 으로 한다.	④ ----- ----- ----- ----- -----. ----- -- <u>75로</u> -----.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 <u>조례로 정하는 기간</u> ”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u>3년을 말한다.</u>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u>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u>	

<u>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u> 2. <u>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u> 3. <u>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u> 제36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6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정이 곤란한 경우</u> ② ----- ----- 75 를 -----.
---	---

관계법령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1 호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폭염 · 폭우 · 폭설 ·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 폭우 · 폭설 ·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폭우·폭설·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재난취약지역”이란 폭염·폭우·폭설·한파에 의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폭우·폭설·한파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방문간호사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폭우·폭설·한파 현황 및 전망
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저감조치 방안
5.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
 - 가.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 다. 도로 살수작업
 - 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우저감조치
 - 가.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 피해 예상지역 정비
 - 나.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설·한파저감조치
 -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 나. 친환경 제설제 확보 및 지원
4.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

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

6.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조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무더위·한파쉼터 냉·난방장비·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폭우·폭설·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폭우·폭설·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통장
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5.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방문간호사
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활동 간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핫팩 등 냉·난방용품의 지원
3. 온열·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2 호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목포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자치경찰·건설·교통업무·취약계층 복지 담당 과장과 목포교육지원청·목포경찰서 및 목포소방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전 및 결과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

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2호의2·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3 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활용 보도용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도 대 장

도 로 명							
노선연장	m	도 로 폭	m	설치년도			
구 간			보 도 폭	•좌측 : m •우측 : m			
구 분	보 도				경 계 석 (블록)		
	포 장 재	폭 (m)	연장 (m)	면적 (a)	재 질	보차도(m)	도 로 (m)
계							
좌 측							
우 측							
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							
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m)		면 적(m ²)				
	연장(m)		포장재질				
② 턱낮추기(개소)	횡단보도	대 상					
		설 치					
	보도진입부	대 상					
		설 치					
③ 유도블록(개소)	점 블 러		줄무늬블럭				
④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개소)							
⑤ 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위치도 (1/10,000)

정 비 실 적									
구 간	정 비 개 요					포 장 재		사업 기간	시행자
	폭 (m)	연장 (m)	면적 (a)	사업비 (천원)	예산구분 (시. 구. 굴착)	당초	교체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illegi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생 략) <u><신 설></u>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u> 1. <u>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u> 2. <u>재활용 보도용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u>
② ~ ④ (생 략) <u><신 설></u>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4 호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목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등으로 지정 및 조성하여 보행자 통행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u> 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 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① ----- ----- ----- <u>기본계획</u> (이하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u>)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u>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u>기본계획의 수립</u>) ① ----- ----- ----- <u>기본계획</u> ----- ----- -----.
② 시장은 <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u> 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u>기본계획</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u>기본계획</u> 을 수립하여 <u>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목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u>

<신 설>

<신 설>

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9조의2(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신 설>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등으로 지정 및 조성하여 보행자 통행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5 호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본문 중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매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매 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u>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구매 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u>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6 호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30일”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1조 별표3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① (생략)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 <u>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u> ----- ----- -----.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영 제11조 별표3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11조 별표3을 따른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7 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등록 신청 접수”를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로, “실시해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약자 서비스”를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를 “방법 중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교육의 참석자”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u>시행규칙 제6조제2항</u> 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 <u>시행규칙 제6조제3항</u>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2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1. ----- <u>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u>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 <u>안전</u> --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6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 ① ----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 실시하여야 --
-.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신 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1항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 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⑤ (생략)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
방법 중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교육의 참석자-----

-----.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 략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⑪ 생 략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② 생 략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⑤, ⑥ 생 략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8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스티커부착, 단수예고장 게시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하는 정수처분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 (정수처분) ① · ② · ③ (생 략)	제40조(정수처분) ① · ② · ③(현 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 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 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 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스 티커부착, 단수예고장 게시 때 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9 호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로 하고, “필요한”을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 수 료 (제4조 관련)

구 분	기준	수 수 료 (원)	비 고
1. 각종 건강 진단서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5,000	
3. 사체검안서	〃	30,000	
4. 예방접종 증명	〃	무 료	
5. 기타 각종 증명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한 금액	
6.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	〃	1,000	온라인 발급은 무료
7. 구급차 이용	〃	무 료	
8. 건강진단 결과서	〃	3,000	「감염병 예방법」 제19조 (건강진단)
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u>지역보건법</u> 」 제14조 및 「 <u>지역보건법 시행규칙</u> 」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u>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u> 등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u>지역보건법</u> 」 제25조----- ----- ----- ----- <u>보건소, 보건지소</u> ----- <u>필요한</u> 사항과 「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u> 」 제5조에서 위임된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 <u>국민건강보험법</u> 」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에 포함된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요양급여”라 한다) 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비 요양급여”라 한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 (정의) ----- -----1. --- ----- 「 <u>국민건강보험법</u> 」 제45조에 따라 -----.		
제3조 (진료비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진료비를 실시하고 부과·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보		제3조 (진료비의 부과·징수) ㊦----- ----- -----		

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로 부과·징수하되, 치과진료비중 치석제거 진료비는 1회당 30,000원으로 하고, 복합레진(전치부) 진료비는 1치아당 3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으로 한다.

1. 각종 건강진단서
2.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3. 사체검안서
4. 기타 각종 증명서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삭 제>

제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수수는(「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1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895 호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목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목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7·10·20, 98·7·13, 98·9·29> 1. 시장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국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 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

현행	개정안
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9·29></u> <u>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u> <u>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u> <u>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u> <u>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u>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u>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29></u>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u>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u>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 <u>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u> <u>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u>	제8조(인계인수거부) <u>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u> <u>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u>

현행	개정안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②목포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0·20>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시행 2015. 6. 8.]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672호, 2015. 6. 8., 일부개정]

전라남도 목포시(자치행정과), 34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7·10·20, 98·7·13, 98·9·29>

1. 시장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9·29>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2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② 목포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0·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무인계인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7·10·20 규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3 규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9 규125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③ (생략)

부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서류 및 장부의 목록 -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 가. 담당 업무
-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203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제10조)

4. 조례개정(안) : 별 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존속기한)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 ~ 2025. 10. 21. (20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21. 18:00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메일,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주 소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용당동)

○ 전 화 : 061) 270-3426, 팩스 : 061) 270-3578

○ 이메일 : showmaker@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 (<http://www.mokpo.go.kr>) 또는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061) 270-342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개정 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준속기한) 기금의 준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10조(준속기한) ----- -- <u>2030년 12월 31일</u> -----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2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명시
- 이해관계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신설
- 학술용역 과제 심의 전, 유사·중복 검증 절차 규정 신설
- 학술용역 실명제 실시 조항 신설
- 학술용역 평가 및 불량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개선의견 수용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5. 10. 1. ~ 10. 21. (20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② 과제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학술용역과제 사전검토) ①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원·부서 등에서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학술용역 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활용
5. 그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학술용역 결과 관리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학술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학술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는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용역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용역명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검토일자				
용역 목적				
용역 주요내용				
검토 개요	검토 대상 및 범위			
	검토 자료 수집 경로			
검토 결과	유사·중복 용역 여부 : [] 있음 [] 없음 ※ 유사·중복되는 기존 학술용역 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필요			
	검토 의견			
차별성 검토 ※ 유사·중복 선행 용역 있을시	관련 선행 용역	과제명 (시행 연도)	연구자	목적, 방법, 주요 내용 등
	선행 용역과의 차별성			
	새로운 학술용역 필요성			
검토자	과제담당관(소속) : ○○○ (서 명)			

학술용역 평가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 목표의 달성도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 추진 방식의 적절성 (정책 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예산 적정 사용 및 계획 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과제담당관(소속) : ◦ ◦ ◦ (서 명) ◦ 외부전문가(소속) : ◦ ◦ ◦ (서 명)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용역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용역 기간	~ (개월)	용역비	(단위: 천 원)
용역 목적			
용역 주요 내용			
활용 목적			
활용 방안			
향후 추진계획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